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호대, 김경우, 채인묵,
강동길, 정재웅, 이승미,
이병도, 이준형, 경만선,
봉양순, 권수정, 임만균,
신정호, 장인홍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」 상 오기(誤記)를 바로잡고,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민주시민교육”이란 각 급 학교에서 학생, 학부모, 교직원(이하 “학교시민”이라 <u>한다</u>)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, 가치,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교육감은 <u>학교시민들이</u>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① (생 략)</p> <p>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학교시민들의</u>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</p> <p>2. ~ 5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한</u> <u>다</u>)을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학교시민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<u>학교시민의</u>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